협성휴포레 · 경산대평 입주자 모집공고

HUEFORE 협·성/휴·포/레 · 경산대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년 11월 10일(월)입니다. (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1순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은 위단 기준임)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임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만 가점제가 적용되며,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 당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2015.02.27)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 순위제에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변화 : 기존 1,2,3순위 방식을 → 1순위 방식으로 간소화/수도권 1순위 발생요건이 기존 "2년,24회 납입" → "1년,12회 납입"으로 완화)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 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세대원에서 19만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외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제 청약기능/주택금융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기존 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예시-) 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2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6천만원 ' 이하로 변경됨.
■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경산시 건축과 18127호(2015.11.1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107번지 일원 (대지면적 전체 : 19,513.1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9층 4개동 총 4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46세대 포함)

(단위 : ㎡, 세대)

구 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세대 당 계약면적					세대별 대 지 지 분	공급 세대수	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67	2015001406-01	67.9184	67.9184	22.1446	90.0630	40.8711	130.9341	33.1305	116	11	11	11	3	80	4
76	2015001406-02	76.9997	76.9997	26.5905	103.5902	46.3359	149.9261	37.5604	48	4	4	4	1	35	2
84A	2015001406-03	84.9410A	84.9410	27.9079	112.8489	51.1147	163.9636	41.4341	166	16	16	16	4	114	6
84B	2015001406-04	84.9303B	84.9303	28.7315	113.6618	51.1084	164.7702	41.4289	29	2	2	2		23	1
84C	2015001406-05	84.9438C	84.9438	28.2998	113.2436	51.1165	164.3601	41.4355	107	10	10	10	3	74	4
84D	2015001406-06	84.9568D	84.9568	28.5729	113.5297	51.1243	164.6540	41.4418	28	2	2	2		22	1

※ 주거공용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안내

구 분	특별공급	1순위 접수	2순위 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일정 (3일간)
일 정	2015. 11. 24. (화)	2015. 11. 25. (수)	2015. 11. 26. (목)	2015. 12. 02. (수)	2015. 12. 08. (화) ~ 2015. 12. 10. (목)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타 입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 급 금 액			계 약 금		중 도 금						잔금 (2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10%) 계약시	2차 (10%) 2016. 01. 10	1회 (10%) 2016. 06. 30	2회 (10%) 2016. 11. 30	3회 (10%) 2017. 05. 30	4회 (10%) 2017. 08. 30	5회 (10%) 2017. 11. 30	6회 (10%) 2018. 02. 28	입주지정일
67	1층	4	116	65,136,444	166,013,556	231,150,000	23,115,000	23,115,000	23,115,000	23,115,000	23,115,000	23,115,000	23,115,000	23,115,000	46,230,000
	2~3층	8		65,136,444	171,613,556	236,750,000	23,675,000	23,675,000	23,675,000	23,675,000	23,675,000	23,675,000	23,675,000	23,675,000	47,350,000
	4~5층	8		65,136,444	177,213,556	242,350,000	24,235,000	24,235,000	24,235,000	24,235,000	24,235,000	24,235,000	24,235,000	24,235,000	48,470,000
	기준층	96		65,136,444	182,813,556	247,950,000	24,795,000	24,795,000	24,795,000	24,795,000	24,795,000	24,795,000	24,795,000	24,795,000	49,590,000
76	1층	2	48	73,845,879	189,174,121	263,020,000	26,302,000	26,302,000	26,302,000	26,302,000	26,302,000	26,302,000	26,302,000	26,302,000	52,604,000
	2~3층	4		73,845,879	194,774,121	268,620,000	26,862,000	26,862,000	26,862,000	26,862,000	26,862,000	26,862,000	26,862,000	26,862,000	53,724,000
	4~5층	4		73,845,879	200,374,121	274,220,000	27,422,000	27,422,000	27,422,000	27,422,000	27,422,000	27,422,000	27,422,000	27,422,000	54,844,000
	기준층	38		73,845,879	205,974,121	279,820,000	27,982,000	27,982,000	27,982,000	27,982,000	27,982,000	27,982,000	27,982,000	27,982,000	55,964,000
84A	1층	3	166	81,461,793	209,948,207	291,410,000	29,141,000	29,141,000	29,141,000	29,141,000	29,141,000	29,141,000	29,141,000	29,141,000	58,282,000
	2~3층	12		81,461,793	215,448,207	296,910,000	29,691,000	29,691,000	29,691,000	29,691,000	29,691,000	29,691,000	29,691,000	29,691,000	59,382,000
	4~5층	12		81,461,793	220,948,207	302,410,000	30,241,000	30,241,000	30,241,000	30,241,000	30,241,000	30,241,000	30,241,000	30,241,000	60,482,000
	기준층	139		81,461,793	226,448,207	307,910,000	30,791,000	30,791,000	30,791,000	30,791,000	30,791,000	30,791,000	30,791,000	30,791,000	61,582,000
84B	1층	1	29	81,451,569	198,298,431	279,750,000	27,975,000	27,975,000	27,975,000	27,975,000	27,975,000	27,975,000	27,975,000	27,975,000	55,950,000
	2~3층	2		81,451,569	209,298,431	290,750,000	29,075,000	29,075,000	29,075,000	29,075,000	29,075,000	29,075,000	29,075,000	29,075,000	58,150,000
	4~5층	2		81,451,569	214,798,431	296,250,000	29,625,000	29,625,000	29,625,000	29,625,000	29,625,000	29,625,000	29,625,000	29,625,000	59,250,000
	기준층	24		81,451,569	220,298,431	301,750,000	30,175,000	30,175,000	30,175,000	30,175,000	30,175,000	30,175,000	30,175,000	30,175,000	60,350,000
84C	1층	2	107	81,464,545	204,285,455	285,750,000	28,575,000	28,575,000	28,575,000	28,575,000	28,575,000	28,575,000	28,575,000	28,575,000	57,150,000
	2~3층	8		81,464,545	215,285,455	296,750,000	29,675,000	29,675,000	29,675,000	29,675,000	29,675,000	29,675,000	29,675,000	29,675,000	59,350,000
	4~5층	8		81,464,545	220,785,455	302,250,000	30,225,000	30,225,000	30,225,000	30,225,000	30,225,000	30,225,000	30,225,000	30,225,000	60,450,000
	기준층	89		81,464,545	226,285,455	307,750,000	30,775,000	30,775,000	30,775,000	30,775,000	30,775,000	30,775,000	30,775,000	30,775,000	61,550,000
84D	2~3층	2	28	81,476,932	215,433,068	296,910,000	29,691,000	29,691,000	29,691,000	29,691,000	29,691,000	29,691,000	29,691,000	29,691,000	59,382,000
	4~5층	2		81,476,932	220,933,068	302,410,000	30,241,000	30,241,000	30,241,000	30,241,000	30,241,000	30,241,000	30,241,000	30,241,000	60,482,000
	기준층	24		81,476,932	226,433,068	307,910,000	30,791,000	30,791,000	30,791,000	30,791,000	30,791,000	30,791,000	30,791,000	30,791,000	61,582,000

■ 주택형 표시 안내 (모집공고, 견본주택, 카달로그, 홈페이 등에 공고상 주택형 대신 약식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상 주택형	67.9184	76.9997	84.9410A	84.9303B	84.9438C	84.9568D
약식표기	67	76	84A	84B	84C	84D

■ 공통사항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상태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초등학교는 정왕초등학교와 당정초등학교로 통학하며, 중학교는 경산시 중학교군에 학교배정 (구체적인 사항은 경산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 발코니 확장 및 시설품에서, 빌트인가전, 빌트인가구 등의 추가사항 품목은 아래표 별도로 명시, 진행되며 청약 이후의 분양계약시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아이나스 옵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나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권리의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건축물등기시 표시되는 대지권비율)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역특화정책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상시 주차장조례에 의거 여성전용주차장이 지하주차장 각 동의 엘리베이터 입구 부근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층(주차장 이용시설)을 기준으로 상층으로 갈수록 전용면적 및 공급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수는 건립 동별, 평형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일괄타입 있는 동은 일괄타입 층수를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개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합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근액을 입주자가 전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분양공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되, 잔금은 입주일 발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인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로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의 분양대금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공사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사가 일반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해에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등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사용검사 이전에 세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전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합니다.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입주일보다는 한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세입자세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세로서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시행자 (매입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세입주세가 정해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정 및 사업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수분양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의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공급 및 일반 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사용 제출서류만 접수하겠습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무인택배시스템, 주민운동시설, 체온 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등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정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표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③↓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참조)
→ ①에 해당되는 분들 중 2명 충족하는 분들 중 2명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세로 동일함)
※ 세대구성원 = 세대주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 청약통장 가입요건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세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등은 청약요건 예외 대상임)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일 전까지 납입한 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요청 및 qap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접수 수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유아시장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 발표일 기준 세대원 수에 따라 1회에 한해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철거주택 소유자 등은 적용 배제됨
- 1세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의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자격 등의 상실 및 제사용 불가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자격 등의 상실 및 제사용 불가
- 본 아파트는 경산시 90일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 8월 2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제2호 및 경산시 고시 제2015-10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하여 주민등록등본 경산시 9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경산시 9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 중 주택공급 신청자 수가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제2호 및 경산시 고시 제2015-10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하여 주민등록등본 경산시 9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 (2015.08.20이전부터가 경산시 90일 미만 계속 거주신청자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경산시 90일 미만 계속 거주 신청자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반투기지정구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1순위 자격 상실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의 청약한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청약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해당되어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세대원이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주택은 67㎡, 84A㎡, 84C㎡의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76㎡, 84B㎡, 84D㎡형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이파트는 안심하고 분양받으시도 됩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청자격
①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민증에 기재된 노적자, 장애우, 인터넷등록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적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매일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낙찰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개별은행 본 · 지점 창구에서 가능)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1순위 이상자만 해당)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 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원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l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금 액	신청금 납부 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인터넷 청약 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 전 계좌잔액을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유지 영업점 방문 청약 시(09:00~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 · 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창구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 분	환 불 창 소	비 고
인터넷 신청시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은행창구 접수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 · 지점 방문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사항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발급일 유효 전소일기준 에 의한 위임장 제출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제출 및 신청인 서명 확인 (단, 2순위자) 청약금 이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는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인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